

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(박영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0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

발의의원 : 박영동 의원,

신동윤 의원, 이연숙 의원

1. 제안이유

무선안전장비와 융·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를 이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·3조)

나.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 건설공사 스마트안전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건설공사”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다.
2. “건설사업자”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다.
3. “무선안전장비”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다.
4. “융·복합건설기술”이란 사물인터넷(IoT), 빅데이터, 인공지능(AI)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.
5. “스마트 안전관리장비”란 무선안전장비, 융·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.
6. “스마트 안전관리체계”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·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·복합건설기술, 무선

통신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·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.

제5조(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) 군수는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지원
2. 관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조사
3.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교육 및 홍보) 군수는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·홍보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건설산업기본법(법률)」(2023.8.8. 타법개정, 2024.5.17. 시행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건설공사”란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, 환경시설공사,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·유지·보수하는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)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가.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

나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

다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

라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

7. “건설사업자”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

□ 「건설기술 진흥법(법률)」(2024.10.22. 타법개정·시행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2. “무선안전장비”란 「전파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.

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·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2조의2(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

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(이하 “소규모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이를 발주자(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62조의3(스마트 안전관리 보조·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·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(이하 “보조·지원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**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
관한 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**

1. 재정수반요인

- 제5조에 따른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지원 및 실태조사,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에서 비용 발생이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2호)

3. 미첨부 사유

- 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지원 범위 등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지므로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비용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작 성 자

소 속 및 직 위

달성군의회 의원

성 명 (연 락 처)

박 영 동 (☎ 2055)